의안번호	제 162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5월 일 (제 300 회)

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1년 5월 3일

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162

제출연월일 : 2011. 5. 3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○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·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종전 시·도 교육감 소속에서 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「평생교육법」 이 개정됨에 따라,

충청북도에서「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」를 제정·공포(2011. 2. 11, 충청북도 조례 제3326호)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감 소관의 「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「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해당없음
라. 기 타 :
(1) 입법예고 : 생략
(2) 규제심사 : 생략
(3) 부패영향평가 : 생략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**평생교육법** [법률 제8676호, 2007. 12. 14, 일부개정]

제12조 (시·도평생교육협의회) ①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평생교육협의회(이하 "시·도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도협의회는 의장·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시·도협의회의 의장은 시·도지사로 하고, 부의장은 시·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.

④ 시·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,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,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·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.

⑤ 시·도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**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** [조례 제3326호, 2011. 2. 11, 제정]

제2조(설치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평생교육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